



2010신용보증기금

업무가이드

KOREA CREDIT GUARANTEE FUND

NewChallenge! NewChange!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KDIT 신용보증기금

Contents

I. 일반현황

- 2 설립목적
- 3 연혁
- 4 기구조직
- 5 주요업무

II. 신용보증

- 6 신용보증제도 개요
- 7 신용보증의 종류
- 8 대상기업
- 9 보증이용 절차
- 12 기타 주요 보증제도

III. 보증연계투자

- 13 업무개요
- 15 취급절차
- 16 보증연계투자의 장점

IV.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 17 업무개요
- 18 지원대상
- 19 지원한도
- 20 발행금리
- 20 신청절차

V. 산업기반신용보증

- 21 업무개요
- 23 보증대상사업에 따른 보증업무의 개요
- 30 산업기반신용보증 이용 시 장점

VI. 신용보험

- 31 신용보험제도 개요
- 32 매출채권보험
- 37 어음보험

VII. 창업지원종합시스템(C3S)

- 41 업무개요
- 41 기본구조
- 41 창업지원서비스 종류
- 42 창업보증지원

VIII. 기업경영지원

- 43 업무개요
- 43 경영컨설팅
- 44 기업연수
- 44 경영정보 제공
- 44 기타 지원업무



New Challenge! New Change!

신용보증 기금은 혁신을 위한 창의적 도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일반현황

1. 설립목적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보증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

- ◆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법적성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2. 연혁

1961.11.01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1974.12.2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 공포
1976.06.01	신용보증기금 창립
1989.04.01	기술보증기금으로 기술신용보증업무 이관
1995.05.30	산업기반(SOC)신용보증기금업무 시행
1997.09.01	어음보험업무 시행
1998.05.2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으로 지정
2000.07.01	유동화회사특별보증업무 취급
2003.08.05	중소 · 중견기업 유동화회사보증업무 취급
2004.03.01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이관
2004.03.02	매출채권보험업무 시행
2005.03.25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신용정보업무 이관
2006.06.01	신용보증기금 NEW CI 선포

I. 일반현황



3. 기구조직

- 본부조직 : 4부문 12부 3실
- 영업조직 : 영업본부(8) 채권관리팀(26) 영업점 (86) 사무소 (13)





4. 주요업무

신용보증	(일반보증)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 등을 조달하는데 따른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SPC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이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이용기업에 직접 투자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업상담▶창업스쿨▶창업자금▶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기업경영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진단지도
신용보험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산업기반신용보증 (SOC보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또는 민간선투자사업자의 SOC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SOC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민간선투자사업자 또는 민간선투자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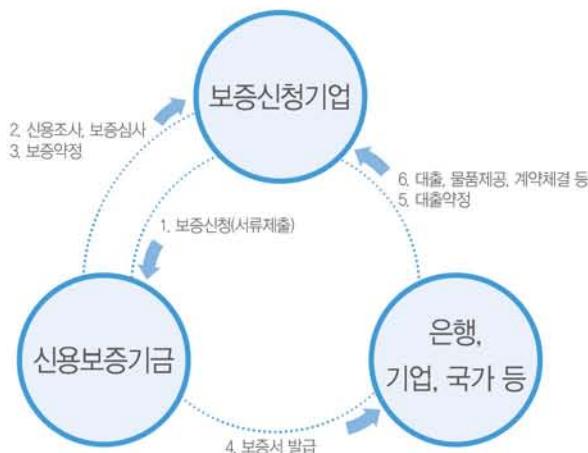


II. 신용보증

1. 신용보증제도 개요

기본구조

-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



보증운영 체계



보증이용에 따른 장점

- 담보문제 해소
 - 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 제공
- 비용절감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 기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우수기업에 선별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 이용의 편리성
 - 기업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대표자 등을 제외하고 제3자 연대보증 면제



2. 신용보증의 종류

일반보증	보증종류	내 용
	대출보증	<p>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제2금융보증	<p>중소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어음보증	<p>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여음 보증 및 지급여음, 받을여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p>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급보증의 보증	<p>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래 구상 채무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사채보증	<p>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가 대상채무
	납세보증	<p>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p>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p>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p>

II. 신용보증



3. 대상기업

보증대상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과 이들의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보증대상업종	사행성 · 불건전 오락업종 및 부동산투기 조장 업종 등에 대하여는 보증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보증을 제한

보증금지대상

- ① 신보, 기보, SOC기금,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② 매출채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
- ③ 위 ①기업의 대표자, 과점주주인 이사 및 실제경영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

보증제한대상

- ① 휴업중인 기업
- ② 은행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③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
- ④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를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⑤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⑥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⑦ 신보, 기보 및 SOC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부실(사고)처리 유보기업을 포함]
- ⑧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이
실제경영자로 있는 기업



4. 보증이용절차

업무흐름도	단계별 절차
	<p>1 보증신청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신청 –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생략)
	<p>2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p>3 보증심사 및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등급 산출 – 최고 보증한도 및 운전자금 보증한도 검토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영업점 승인 또는 본부 승인
	<p>4 보증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결제 가능)
보증신청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의 고객전용 PC를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금액 입력
신용보증상담	대표자 또는 기업관련인과 상담 등을 통하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p>신용보증 상담시 도움이 되는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최근년도 재무제표 (매출실적 확인자료) – 기타 사업현황 설명자료 (사업계획서 등)



II. 신용보증

4. 보증이용절차

자료수집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는 고객의 협조를 얻어 신보 직원이 직접 자료원천별 수집 경로를 통해 수집

수집자료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 등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신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행정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 · 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 <small>주)</small> 	대표자 본인 등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
국세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신보에 Hometax 문서발급번호 통지
금융거래 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동의
세무회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년, 전년) 재무제표(최근 3년) 	세무사사무실 및 고객이 신보에 자료 전송
기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예비조사시 Fax로 주주명부 등 제출

주) 그 외 행정정보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축허가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신용조사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보증심사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사업성, 보증부대출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 지원 가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 신보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을 통해 산출된 종합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다양한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실체를 종합판단
- 보증 신청기업이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SBSS : Start-up Business Scoring System) 적용

보증결정 및 승인통지

- 보증이 결정되면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

약정체결과 보증서 발급

-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본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 · 날인 및 보증료 납부



보증료

고객의 신용도에 상응한 보증료 수납

보증료 운용체계

(단위 : %)

신용등급별

0.5% ~ 2.5%

가산
보증료율

- 보증비율 미충족 기업 : 0.2%p

- 갱신 · 연장시 일부해지기준 미충족기업 : 0.1~0.4%p

- 장기분할보증 기한전 갱신보증 기업 등 : 최대 0.4%p

- 비효율부문기업 중 특별약정체결거부 및 보증해지계획미이행 기업 : 최대 0.4%p

신보선정
우량기업

- Best-Partner 선정기업 : 0.2%p

- 유망중소기업 : 0.2%p

- 혁신형 중소기업 : 0.1%p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0.2%p

- KC2 등급이상 전자상거래보증 : 0.1%p

- 시설자금보증(전액해지 조건) : 0.1%p

- 시설자금보증(50%이상 해지 조건) : 0.1%p

- 창업 5년내 여성기업 : 0.1%p

- 장애인기업 : 0.3%p

- 창업초기기업 : 0.1%p

- 협약보증 중 차감대상운용보증 : 최대 0.3%p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 0.1%p

차감
보증료율(2개 이상
해당 시
차감율이 큰
1개만 적용)

정책우대부문

기타 보증
프로그램

- 경쟁력향상 프로그램 기업 : 0.2%p 이내

- 창업지원 프로그램 주진대상 : 0.6%p 이내



보증료율 조정

+0.2%p ~ -0.5%p



대기업

가산 : 0.5%p

보증료율
상 · 하한선상 한
하 한3.0% (대기업 3.5%)
0.5%



5. 기타 주요보증제도

한도거래보증

여러 건의 보증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할 때마다 자료수집,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보증한도와 한도거래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즉시 발급하는 제도

전자상거래보증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결제 지급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전자상거래대출보증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융보증

납품 · 하청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기업이 어음발행 대신 구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무역금융보증

「금융기관 등」이 취급하는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미확정 채권 포함)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

III. 보증연계투자



1. 업무개요

『보증연계투자』 란?

비상장 우량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복합상품으로서, 신용보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업이나 이미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 투자(주식, 사채)를 신청할 경우 신용도, 사업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

『보증연계투자』 대상 등

대상기업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설립후 5년 이내의 혁신선도형 기업으로서 투자부적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장중소기업	
투자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식 (우선주, 보통주)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한도	구 분	혁신선도형기업
	투자한도 (주식+사채)	50억원
	통합한도 (투자+보증)	100억원
	* 종합신용등급에 따라 투자한도 차등 적용	
투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식 : 3 ~ 10년사채 : 2 ~ 5년 (가급적 5년이내 운용)	



III. 보증연계투자



1. 업무개요

혁신선도형 기업이란 ?

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2.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혁신형 (INNO-BIZ)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외국 기술·자본 투자기업(주식지분 20%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예상되는 기업
5.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6. 신보 선정 Best-Partner 기업
7. 차세대성장산업(6T) 영위기업
8. 기타 고도의 첨단기술력, 고부가가치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

투자 부적격 기업의 범위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
2. 기 투자된 원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기업 등 신보가 정한 '투자금지대상' 기업
3. 신보의 CCPS등급이 KC3 이하인 기업
4. 신보의 「기업가치에 의한 여유신용공여한도금액」 이 투자(예정)금액 미만인 기업
5. 신보의 현금흐름표 종합판정등급이 CR-4 이하인 기업
6. 최근 1년이내 기업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당기업,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8.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예외적용

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10억원 이내의 투자는 상기 3 ~ 5에 해당하더라도 경영능력,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 등이 우수할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투자 가능



2. 취급절차



- | | |
|------------------|--|
| 1
업체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추천 및 본부 자체 발굴 |
| 2
사전검토 및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부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 규모, 재무구조 및 보증현황 고려하여 지원 규모 검토 • 영업점 : '보증연계투자신청서'에 의해 신청접수 |
| 3
투자조사 및 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부 : 재무상태, 사업전망, 기술성 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실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활용 등 • 영업점 : 보증을 위한 기업실사 및 심사 |
| 4
지원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부 :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투자지원 결정 • 영업점 : 보증승인에 관한 전결규정에 따라 보증지원 결정 |



3. 『보증연계투자』의 장점

- 1 기업가치 상승**
 - 공신력있는 중소기업 전문지원기관인 신보로부터의 투자유치
- 2 부가 서비스**
 - 추가적인 보증지원, 경영지도 등 부가서비스 가능
- 3 경영간섭 배제**
 - 보증연계투자는 경영간섭배제를 원칙으로 함
- 4 우량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회수된 투자자금으로 새로운 우량중소기업 투자 또는 보증지원 재원으로 활용





IV.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1. 업무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Pooling)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와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신용보증 제공
-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된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자금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재매입(Return)
- SPC는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의 금리차(Excess spread)로 확보된 잉여현금으로 보증료 등 유동화업무와 관련된 제 비용 충당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IV.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2.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신용등급(CCRS) KC3(B+)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신용등급(CCRS) KC2(BB-)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주1) ()인은 회사채등급, 회사채등급이 있는 중소기업은 회사채등급 적용

주2)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하는 30대 주체무개열에 속하지 않는 기업

편입제한 대상

채무불이행 위험기업 및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 보증금지, 보증제한, 보증부실사유 발생기업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 신용등급 BB+(CCRS등급 KB4) 이하로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

경영권이 불안정한 기업

- 구속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신보의 차환 유동화회사 보증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도덕적해이 등이 발생한 기업

- 보증사업심사위원회가 판단하여 편입 제외한 기업



3. 지원한도

신용등급별 한도	구 분	BBB이상 (KB2이상)	BBB- (KB3)	BB+ (KB4)	BB (KC1)	BB- (KC2)	B+~B (KC3~KC4)
		500억원	400억원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7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	200억원	15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중소기업						

주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출액, 자기자본, 차입금 및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

매출액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이내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이내 기타 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자기자본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OCFS등급 KC3이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4배 이내
차입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사업상 사채발행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사채발행 잔액이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4. 발행금리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비 발행금리 우대 적용 예정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5.3%(KA1등급 이상) ~ 7.3%(KC3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6%(BBB+등급 이상) ~ 9%(BB-등급) 수준

주1) 상기 금리수준은 2010.4.21일자 투자금융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시가평가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후순위채 연율 1 ~ 2%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단, 중소기업은 0.5 ~ 1.0% 수준 예상)

주3)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또는 실제경영자 중 1인 이상 연대입보

단,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 중 회사채등급 BBB+등급 이상, 중견기업 중 BBB-등급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5. 신청절차



주) 신용평가회사의 유효한 회사채 평가등급 보유 기업 및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기업은 주관회사에서 신청절차 담당





V. 산업기반신용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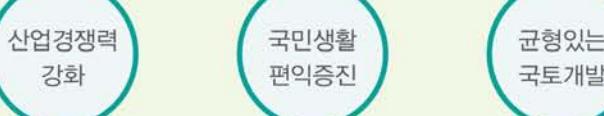
1. 업무개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및 민간선투자사업자가 민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기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 설치

※ 민간선투자사업자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계속비예산으로 편성된 정부발주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시공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업기반 신용보증」 구조



사회기반시설확충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

금융기관
(대출채권)

.....
대출신청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V. 산업기반신용보증

1. 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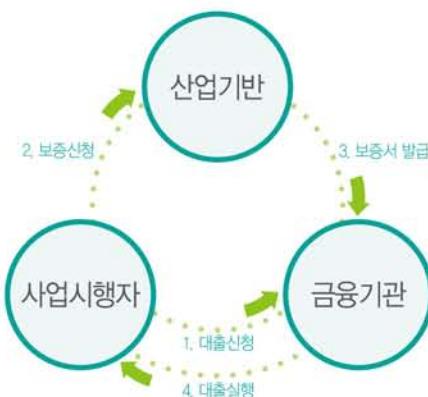
연혁

1994. 0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基金 설치
1995. 05. 정부출연 및 업무개시 (시설자금보증)
1998. 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法 전면개정
2000. 06.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도입
2003. 02. 보증한도 2,000억원으로 확대
2003. 10. 운영자금보증, Refinancing보증 도입
2005. 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法 전면개정
(대상시설 확대 : 35개 시설 ⇒ 44개 시설)
2005. 12. 브릿지론보증 도입
2009. 01. 민간선투자대출보증 도입
2009. 04. 보증한도 3,000억원으로 확대

주요업무

-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
- 신용보증
- 산업기반대출보증
 - 시설자금보증
 - 브릿지론보증
 - 운영자금보증
 - Refinancing보증
-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 민간선투자대출보증
- 보증의향서 발급
- 금융자문 및 주선
-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 개발

지원체계





2. 보증대상사업에 따른 보증업무의 개요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보증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노인주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보건의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대상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중수도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 ·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V. 산업기반신용보증

2. 보증대상사업에 따른 보증업무의 개요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 3,0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함
보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준보증료율 : 0.3%보증료율 적용범위 : 0.2% ~ 1.3% 범위 내에서 사업리스크 및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보증료율 우대적용(중복시 한가지만 적용) : 시설자금보증 및 BTL 사업자금보증 (0.1% 차감)
세부보증종류	<p>① 시설자금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기업 :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업보증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민간투자사업자금지원방법 및 특징 : Project의 사업성 및 출자자 신용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보증지원여부 결정효과 : 민간투자사업자의 원활한 타인자본 조달 <p>② 브릿지론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기업 :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업보증대상채무 : 공사준공시까지 사업관련 투입비용 중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보전가능한 자금에 대한 대출(예: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부가세 환급금, 환차손 보전금, 민원처리보상금 등)지원방법 및 특징 : 한도거래로 운용효과 : 건설기간 중의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해소로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기여 <p>③ 운영자금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기업 :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업보증대상채무 :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족운영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지원방법 및 특징 : 한도거래로 운용효과 : 운영기간 중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SOC사업 운영



세부보증종류

④ Refinancing 보증

- 대상기업 : 아래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사업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기업
 - * 실시협약상 최소 운영수입 보장
 - * 주무관청 등과 장기 공급계약 체결
 - * 운영개시 후 최근 3년간 단순 DSCR 1.30이상 유지
- 보증대상채무 : 민간투자사업의 선순위채무를 Refinancing하기 위한 신규대출 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한 보증
 - 지원방법 및 특징
 - * 비 보증부대출도 Refinancing 가능
 - * 기 대출기한 또는 채권 만기 내에서 Refinancing
 - 효과
 - * 금융비용 절감
 - * 순수 투자자의 SOC사업 참여 용이 및 투자 활성화

⑤ 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

- 대상기업 :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업
- 보증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투자법 제58조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 지원방법 및 특징
 - * 사채보증한도 : 최종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의 4배 이내
 - * 납입자금관리 : 대리은행에 위탁관리
 - 효과
 -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및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면제
 - * 15년 이상의 SOC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15% 분리세율 적용(세율 14%)

V. 산업기반신용보증

2. 보증대상사업에 따른 보증업무의 개요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절차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
 - ① 정관사본
 -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주민등록등본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대표자거주지)
 - ⑥ 부가세과세표준 확인서
 - ⑦ 금융거래확인서
 - ⑧ 재무제표 (추정재무제표 포함)
 - ⑨ 민간투자 사업계획서 사본
 - ⑩ 실시협약서 사본 (실시계획서 사본 포함)
 - ⑪ 기업개요표
 - ⑫ 신용보증 신청서
- 출자자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재무제표



보증의향서

- 대상기업 :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할 기업
- 지원방법 : 보증대상 여부(사업종류, 자금의 특성 등 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전 보증조건을 명시한 보증의향서 발급
- 제출서류
 - * 보증의향서 발급 요청서
 - * 출자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
 - * 사업타당성보고서 등
- 효과
 - * 사업계획서 평가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
 - * 금융비용 절감 유도
- 수수료 : 없음

보증지원실적

도로 : 서울—춘천 고속도로 외

경전철 : 용인경전철 외

공항 : 아시아나 화물 터미널

운항 : 경인운하 굴포전 임시방수로

교량 : 마창대교 외

항만 : 울산신항 외

터미널 : 한국복합물류 외

주차장 : 신월2동 민자주차장 외

터널 : 만월산 터널죽조공사 외

환경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외

※ 그 외 지원사례 다수

V. 산업기반신용보증

2. 보증대상사업에 따른 보증업무의 개요

나. 민간선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대상기업	민간선투자사업자
보증대상사업의 발주처	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증대상채무	민간선투자사업자가 민간선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보증한도	민간선투자대가채권의 범위 내에서 같은 기업당 최고 3,000억원
보증료	연 0.2%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증비율	보증비율 100%의 전액보증으로 운용
보증서 발급시기	초과시공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완료하여 민간선투자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되고 신용보증심사 완료 후 보증승인을 받은 때







3. 산업기반신용보증 이용 시 장점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시행자(출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사업자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강으로 수행사업의 대외 공신력이 제고됩니다. • 저리자금 조달로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 SOC전문가로부터 무료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장기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 인프라 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키워줍니다. 	주무관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p>『민간투자법』으로 SOC사업 추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재정지원, 조세 감면, 토지수용권 인정 등) 및 수익성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자본의 유치가 용이합니다. • 통일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절차가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기업의 효율성 및 창의성 도입으로 경영효율이 향상됩니다. <p>※ SOC 신용보증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지원됩니다.</p>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Recourse방식의 Project Financing의 경우에도 SOC보증은 대출금 전액상환이 보장됩니다. •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로 SOC사업의 사업성 등이 재차 검증됩니다. • 보다 많은 SOC 프로젝트에 여신공여 기회를 드립니다. • 상호교류에 의한 SOC기금과의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통해 국가 SOC시설 확충은 물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	--

나. 민간선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에 긴요한 SOC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편익을 앞당겨 제공합니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투자 자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에 맞춘 최적 자원투입을 통해 장비 · 인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 및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VI. 신용보험

1. 신용보험제도 개요

개념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



※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

보험종류

구 분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보험대상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받을어음
도입시기	2004년 3월	1997년 9월
도입목적	기업의 신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거래처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보험취급방법	근보험으로 취급 (매출채권 일괄 또는 선택 가입)	개별보험으로 취급 (수취한 어음건별로 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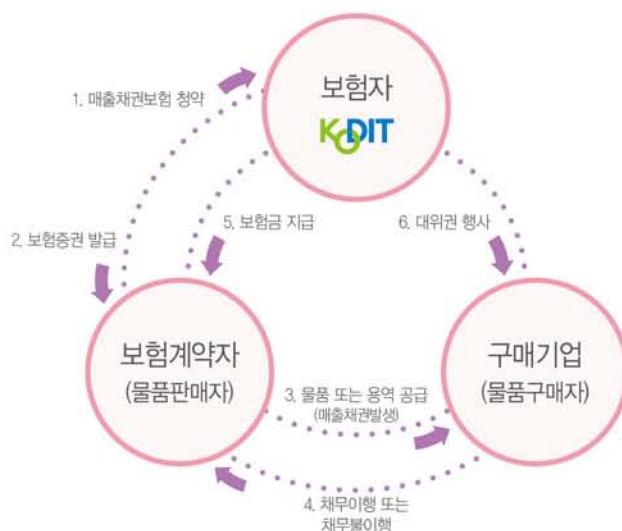
VI. 신용보험



2. 매출채권보험

기본구조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보험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규모 : 중소기업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매출액 : 직전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하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개별근보험 · 개별보험의 경우 1년 이상)
구매기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이행자체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능
보험대상 매출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품의 판매자(보험계약자)가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방법

-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근보험 방식의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함
- 그밖에 매출채권 건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별보험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종 류	운 용 방 식
포괄근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형은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모든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의 운용기간과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미리 정하고, 당해 기간 내에 발생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다만,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거래규모가 작은 일부 구매자는 제외) • 선택형은 표준형을 기초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선택권 부여 • 맞춤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상구매기업을 모두 선택하여 가입 • 소기업 포괄근보험은 당기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에 리스크관리수단 제공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코자 계약자 및 구매자 신용평가 등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운용 • 포괄근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구매기업별로 보험금액을 설정하며, 각 구매기업 및 보험금액은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표시됨
개별근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구매기업 중 하나의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의 운용기간과 보험금액을 미리 정하여 운용하는 보험 • 구매기업은 신용등급이 신보가 정한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정
개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와 구매기업 간에 이미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운용하는 보험 • 구매기업은 신보의 별도 심사를 거친 기업으로 한정

매출채권보험 근보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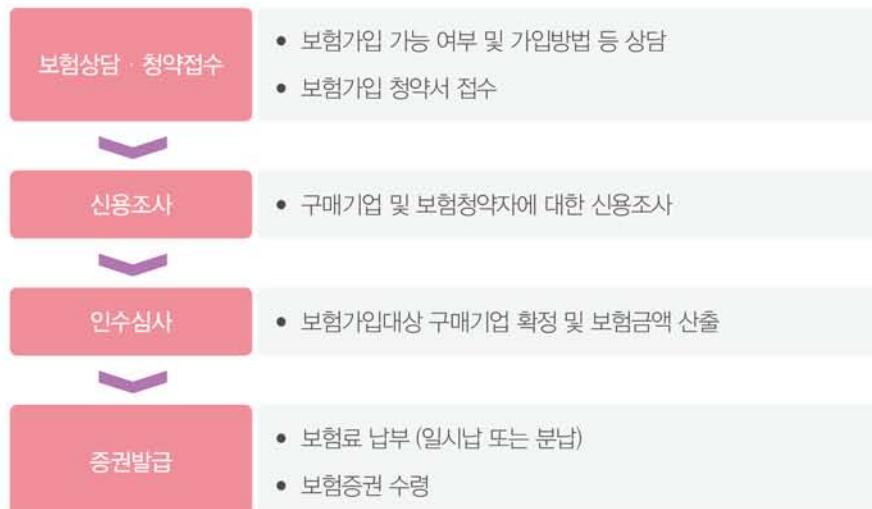
- ①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함
–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으로 함
- ② 건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됨
- ③ 표준형 포괄근보험계약자는 구매기업을 선택할 수 없음
– 다만, 선택형, 맞춤형, 소기업 포괄근보험계약자는 일부 또는 전체 구매기업을 선택할 수 있음

VI. 신용보험



2. 매출채권보험

보험이용절차



매출채권보험 청약 시 필요한 서류

-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소정 양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4개 분기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근보험에 한함)
- 세금계산서 사본 (개별보험에 한함)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등)
- 기타 보험 가입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험가입

• 보험기간

-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 개별보험 :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 보험가입한도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보험에 가입된 각 구매자별로 부여된 보험금액을 합산하여 최고 20억원
(어음보험 가입금액 포함)
- 구매자별 보험가입한도
: 근보험의 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규모, 평균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보험료

- 포괄근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신보에서 보험금액을 부여한 구매자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기간동안 발생할 매출채권총액 중 보험가입 매출채권에 대하여 연율 0.1%에서 5%까지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보험가입대상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 보험계약자와 보험가입대상 구매자들 간에 보험기간 동안 발생할 매출채권총액 중
보험가입 매출채권이 30억원이고, 보험료율이 0.5%라고 하면 납부할 보험료는
약 1천 5백만원임

※ 개별근보험과 개별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구매자와의 보험가입매출채권 또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구매자의 신용도, 결제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최저보험료 :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① 총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근보험 10만원, 개별보험 5만원

VI. 신용보험



2.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사유

-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발생
- 발생된 매출채권의 평균결제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근보험), 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경과(개별보험)한 때

• 보상 범위

- 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과 실제 손해금액의 80%(보상률) 중 적은 금액을 보상

ex) 甲이라는 보험계약자가 A,B,C,D,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으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던 중, 구매자 A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시점의 실제손해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가정), 甲이 지급받을 보험금은 보험금액 1억원과 실제손해금액 1억 5천만원의 80%인 1억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임

- 개별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에 보험인수비율(최고 80%)을 곱한 금액 (보험금액)을 보상

매출채권현황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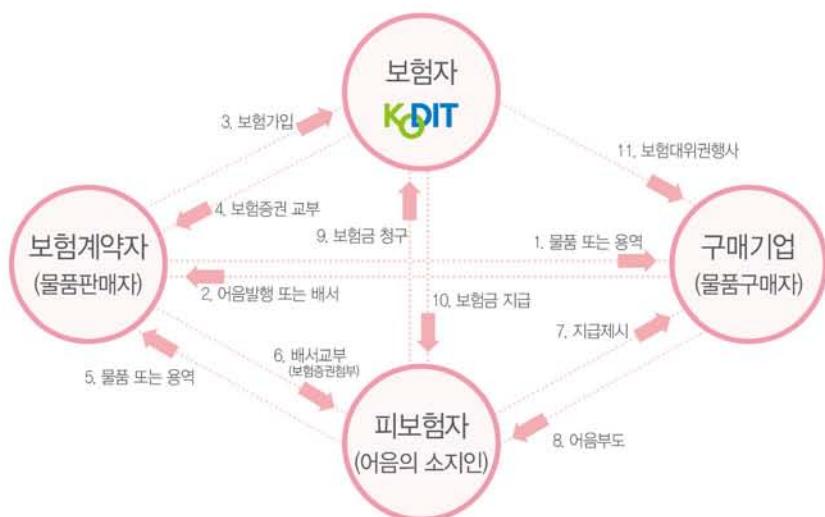
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계약의 종료해지,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액의 감액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채권현황을 신보에 통지하여야 함



3. 어음보험

기본구조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보험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업실적 :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제조관련 도매업의 경우 2년 이상)
어음발행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신청기업(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보험대상 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구매자가 발행 또는 배서(제1배서까지만 허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상업어음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전자어음 포함) - 어음법 제75조에 의한 약속어음 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 다만, 어음발행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만기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VI. 신용보험

3. 어음보험

보험가입방법

신청기업(보험계약자)과 어음발행인의 거래상황 및 어음금액 등을 고려하여 청약

종 류	운 용 방 식
포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에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청기업과 일정기간 가입할 수 있는 어음발행인별 가입한도를 정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그 범위 안에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보험가입 하는 방법
개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어음 건별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가입 하는 방법
소액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음금액 3천만원 이하인 어음에 대하여 간소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가입 하는 방법

보험이용절차





보험이용절차

어음보험 청약 시 필요한 서류

- 어음보험 청약서 (소정 양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 당기매출액 확인자료 (재무제표, 부가세신고서 등)

- 신청기업(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신청기업이 제출하거나 신보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기업체현황, 어음거래 실태 및 어음발행인과의 진정한 상거래 여부 등을 조사

-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 어음발행인의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조사

보험가입

• 보험기간

-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책임유예기간)의 다음 거래일부터 어음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까지

※ 책임유예기간 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가입한도 (인수한도)

- 신청기업 가입한도 ▶ ①, ②, ③, ④중 적은 금액
 - ① 최고한도 : 10억원
 - ② 매출액한도 : 연간매출액 × 1/3 × 70%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 70%
 - ③ 신청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 ④ 20억원 – 매출채권보험계약총액
- 신청기업의 어음발행인별 한도
 - * 같은 보험신청기업이 한 어음발행인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한도
 - ▶ 3억원 이내에서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3. 어음보험

보험가입

- 보험인수비율(어음건별 보험인수비율)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50%~8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보험료율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5%
- 최저보험료: 5만원

보험료계산 예시 (보험료율이 1%, 보험기간이 73일인 경우)

$$- 5천만원(어음금액) \times 70\%(가입비율) \times 1\% \times 73\text{일} / 365\text{일} = 70,000\text{원}$$

※ 보험료율은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과 어음의 지급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험금지급

- 보험사고 사유

- 어음발행인이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어음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금지 또는 지급정지 된 때

- 보험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 보상심사
 - * 신보는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소정의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대위권 행사
 - * 어음발행인 및 어음배서인(배서어음의 제1배서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해 권리행사 (보험신청기업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VII. 창업지원종합시스템(C3S)

1. 업무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지원 종합시스템(C3S)을 구축하였습니다.
- 창업지원종합시스템은 창업상담부터 창업교육, 창업보증, 창업컨설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지원 토탈서비스로서 창업자는 이를 통해 창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3S : Consolidated Support System for Start-up

2. 기본구조



3. 창업지원서비스 종류





VII. 창업지원종합시스템(C3S)

4. 창업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은 34년 중소기업지원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적의 창업자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 분	창업1단계 보증 (Start-up I)	창업2단계 보증 (Start-up II)	창업3단계 보증 (Start-up III)
대상기업	사업시작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업종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초과 3년 이내
대상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소매업 등 일부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소매업 등 일부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제조관련 도매업) • 자식기반·유망서비스업 • 문화기술 관련 업종 등
보증한도 (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 사업장 임차자금 •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 사업장 및 부속시설 임차자금 (시설자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 사업장 및 부속시설 임차자금 (시설자금제외)
보증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적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 3차년도 예상매출액의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적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 3차년도 예상매출액의 1/2 		



VIII. 기업경영지원

1. 업무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범국가적 발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제공 등의 비금융분야의 경영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Best-Partner (www.kodit.co.kr)

경영컨설팅	현장컨설팅 사이버경영자문	• 중소기업 경영상 문제해결 지원
기업연수	집합연수 사이버연수 인재개발원 시설대여	•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능력 향상
경영정보 제공	e-경영참고자료 KODIT 뉴스레터	•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경영컨설팅

현장경영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활동 각 분야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실시
- 기업경영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281명의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며, 신보에서 컨설팅 총비용의 40~100% 지원
- 컨설팅 진행과정



사이버 경영자문

- 중소기업이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 법률, 세무, 수출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신보홈페이지(www.kodit.co.kr)나 사이버경영자문(기업경영지원·경영컨설팅·사이버경영자문)란에 질의하면 전문컨설턴트 또는 사내 변호사가 무료로 답변을 제공하는 사이버 경영컨설팅서비스



3. 기업연수

집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일즈과정, 경리업무종합과정, 매출채권관리과정, 기업결산 및 연말정산과정 등의 직무 관련 Off-Line 연수
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아카데미(http://koditacademy.ubion.co.kr)를 통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On-Line 연수

4. 경영정보 제공

e-경영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전략, 인사, 재무, 마케팅 등 중소기업 경영자, 실무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실무중심으로 엮은 자료(50페이지 내외)로, 홈페이지(www.kodit.co.kr)내 e-지식몰(기업경영지원·e-지식몰)에서 전자문서로 제공
뉴스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신용보증 정책이나 제도, 경영지원 관련 정보를 발간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홈페이지(www.kodit.co.kr)내 정기간행물(코딧소개·사이버홍보실·E-뉴스레터)에서 KODIT뉴스레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거나, e-mail 수신신청으로 매월 「KODIT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

5. 기타지원업무

인재개발원 시설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임직원의 의식개혁, 일터 분위기 개선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서울 천왕동, 강원도 속초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시설(숙박시설, 세미나시설 등) 대여
중소기업 구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www.kodit.co.kr)내 기업구인지원(기업경영지원·기업구인지원)을 이용하여 구인활동 무료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한 사이버 공간 홈페이지(www.kodit.co.kr)내 중소기업제품홍보관(기업경영 지원·중소기업제품홍보관)에 제품 내용 게시 CS지원부(Tel: 02-710-4172, e-mail: maximus@kodit.co.kr)로 관련 제품 이미지를 포함한 상세 설명을 송부하여 게시 요청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을 위한 창의적도전」을 통해
「중소기업과 희망을 함께하는 국민경제의 Leading supporter」로서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

KDIT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고객센터: 1588-6565
www.kodit.co.kr